제412회 임시회
'23. 10. 17.(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정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3년 9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3. 제안이유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조례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,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을 확대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라 규정한 용어의 정의, 도의 책무, 도민의 책무, 민간의 참여조성 조문을 상위법 내용으로 인용 정비하고자 함 (안 제2조～제6조, 제9조)
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을 확대함 (안 제7조의2)

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함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○ 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의 '전몰군경 유족'에서 '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'으로 확대함으로써

○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

○ 아울러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라 규정한 용어의 정의, 도의 책무, 도민의 책무, 민간의 참여조성 조문을 상위법 내용으로 인용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2조~제6조, 제9조에서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과 불일치한 부분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 문구를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< 조례안 개정 내용 >

조문	개정사항	비고
제2조	· 제2조(용어의 정의) → 제2조(정의) · 1. “희생·공헌자”라 함은 → 1. “희생·공헌자”란 · 법령이 → 법령에서 · 가. 일제로부터 → 일제로부터의 · 나. 국가의 수호와 → 국가의 수호 또는 · 다. 대한민국의 → 대한민국 · 라. 국민의 생명과 → 국민의 생명 또는 · 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라 함은 →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· 유가족 → 유족 또는 가족 · 예우와 지원 → 예우 및 지원 · 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라 함은 →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란 · 예우와 지원에 → 예우 및 지원과	법 제3조

조문	개정사항	비고
제3조	· 예우와 지원대상 → 예우 및 지원 대상 · 국가보훈처장 → 국가보훈부장관	법 제3조
제4조	· 나라사랑 정신 → 나라사랑정신 · 조성하는데 → 조성하기 위하여	법 제5조
제5조	·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→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	법 제6조
제6조	·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→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	법 제23조
제9조	· 민간의 참여조성 → 민간의 참여 조성 · 선양, → 선양 및 · 여건조성 → 여건 조성	법 제30조

○ 안 제7조의2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를 현행의 '전몰군경 유족'에서 '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'으로 확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
-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의 공로를 존중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보훈문화 고취와 충북도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

- 현재 전몰군경 유족의 보훈명예수당은 월3만원이며, 지급 대상자는 약 1,106명으로 2023년 제1회 추경기준 2억 6,54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
- 본 개정안의 내용으로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에까지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확대될 경우 1,021명이 추가되어 연간 3억 6,756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○ 안 제1조, 제6조, 제7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< 조례안 자구수정 내용 >

조문	개정사항	비고
제명	·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**예우와 지원에** 관한 조례 →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**예우 및 지원에** 관한 조례	상위법 문구 인용 및 명확한 의미전달
제1조	· 「국가보훈기본법」 →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· 예우와 지원 → 예우 및 지원	법령명 띄어쓰기 명확한 의미전달
제6조	· 희생·공헌자의 예우와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→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	명확한 의미전달 위해 예우 및 공훈의 주체를 명시함
제7조	· 조례가 → 조례에서	조례는 행위주체가 아닌 비인격체임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에까지 확대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보답하고,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

○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,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

○ 다만,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이 확대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

참고1 **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 현황**

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

○ 지원근거 : 「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○ 지원대상 : 7,006명(6·25참전유공자 1,795, 월남전참전유공자 5,211)
○ 예 산 액 : 4,764,080천원(도비 100%)
- 산출근거 : 7,006명 × 50천원 × 4월 = 1,401,200천원
7,006명 × 60천원 × 8월 = 3,362,880천원 ※ '23년도 제1회 추경(1만원 인상)
○ 지원내용 :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(1인 월 60천원)

❑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

○ 지원근거 : 「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2
○ 지원대상 : 전몰군경 유족 1,106명
○ 예 산 액 : 265,440천원(도비 100%)
- 산출근거 : 1,106명 × 30천원 × 8월 = 265,440천원 ※ '23년도 제1회 추경
○ 지원내용 :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(1인 월30천원)

❑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

○ 지원근거 :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○ 지원대상 : 특수임무유공자 50명
○ 예 산 액 : 12,000천원(도비 100%)
- 산출근거 : 50명 × 30천원 × 8월 = 12,000천원 ※ '23년도 제1회 추경
○ 지원내용 :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(1인 월30천원)

❑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

○ 지원근거 : 「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4조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유족 197명
○ 예 산 액 : 47,280천원(도비 100%)
- 산출근거 : 197명 × 30천원 × 8월 = 47,280천원 ※ '23년도 제1회 추경
○ 지원내용 :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(1인 월30천원)

참고2 **충청북도 국가유공자·보훈단체 현황**

❑ 국가유공자 등 현황

( ) 65세이상 인원수 / '23.9.30.기준

계 (명)	독립유공자 (유족)	전상 군경	공상 군경	전몰 군경 유족	순직 군경 유족	무 공 보 국	4.19 민 주	6.25참전 유공자	월남전 참전자	고엽제	특수 임무	공 상 공무원
15,151	223	1,561 (1,558)	1,432 (560)	1,125 (1,089)	560 (459)	1,986 (1,254)	32 (17)	1,454 (1,454)	5,081 (5,081)	1,481 (1,481)	48 (28)	168 (108)

❑ 보훈단체 현황(10개소)

단 체 명	대 표	연 락 처	위 치	비고
광복회 충북도지부	장 기 영 (53년생)	273-8150	봉명동 (광복회관)	
상이군경회 충북도지부	채 정 석 (47년생)	293-9069	용암동 (상이군경회관)	
전몰군경유족회 충북도지부	정 병 남 (48년생)	256-3353	북문로 (보훈회관)	
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도지부	김 춘 자 (47년생)	256-40436	북문로 (보훈회관)	
무공수훈자회 충북도지부	박 종 규 (42년생)	215-0625	봉명동	
고엽제전우회 충북도지부	임 광 식 (50년생)	266-2192	사직동	
6·25참전유공자회 충북도지부	연 병 권 (31년생)	268-0625	운천동	
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도지부	이 재 영 (64년생)	213-8240	장성동 (제2보훈회관)	
월남전참전자회 충북도지부	서 동 식 (49년생)	266-9838	장성동 (제2보훈회관)	
충청북도 재향군인회	조 성 보 (54년생)	266-3881	운천동 (향군회관)	